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 할 수 있으며, 실행체계로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3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공공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의 증가, 도·농 격차, 취약한 식량안보와 먹거리 복지, 양극화 등으로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목적으로 충북도의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2017.09.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2021.01.13
경기도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2019.01.07
충청남도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2019.12.30
전라남도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0.04.02
경상남도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2020.02.06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먹거리 기본권”, “지역 먹거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함
- 안 제5조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은 안 제6조에 따라 결과 평가 등을 통해 환류과정을 거쳐 정책효과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7조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는 충청북도 먹거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의 기관으로서 먹거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
- 안 제9조에서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와 위촉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게 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정부에서는 국가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포함하였음

- 우리 도에서도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신선·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충북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용역기간 : '20.6.26.~ '21.6.14

- 본 조례는 먹거리 종합전략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먹거리 위원회 구성 근거 등 정책추진체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임
- 이에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됨